

# 힐스테이트 사직아시아드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51-8235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09.19 이전부터 계속 거주)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대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9.19.(금)	2025.09.29.(월)	2025.09.30.(화)	2025.10.01.(수)	2025.10.16.(목)	2025.10.17.(금) ~2025.10.23.(목)	2025.10.27.(월) ~2025.10.29.(수)

##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와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 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 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sajik>)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이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9.19.(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 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1년이상 거주자(2024.09.19.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09.29.(월)	2025.09.30.(화)	2025.10.01.(수)	2025.10.16.(목)	2025.10.17.(금) ~2025.10.23.(목)	2025.10.27.(월) ~2025.10.29.(수)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힐스테이트 사직아시아드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11)</li> </ul>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5.10.16.)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6개월

###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동래구 건축과 - 40660호(2025. 09. 1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2동 630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5층 10개동 총 1,068세대(조합756세대, 보류지 10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302세대  
[특별공급 171세대(기관추천 30세대, 다자녀가구 30세대, 신혼부부 72세대, 노부모부양 9세대, 생애최초 3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sup>2</sup>,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440	01	50.9871	50	50.9871	16.1994	67.1865	35.2366	102.4231	25.9336	23	2	2	7	2	2	15	8	2
	02	59.9648A	59A	59.9648	19.0683	79.0331	41.4404	120.4735	30.5000	28	3	3	7	1	3	17	11	5
	03	59.9760B	59B	59.9760	21.1067	81.0827	41.4480	122.5307	30.5057	33	3	3	8	1	3	18	15	2
	04	59.9740C	59C	59.9740	19.6155	79.5895	41.4468	121.0363	30.5046	11	1	1	4	0	1	7	4	1
	05	78.9895	78	78.9895	24.0383	103.0278	54.5879	157.6157	40.1765	60	6	6	13	2	6	33	27	4
	06	84.9012A	84A	84.9012	25.9307	110.8319	58.6733	169.5052	43.1834	11	1	1	4	0	1	7	4	4
	07	84.9807B	84B	84.9807	26.5230	111.5037	58.7281	170.2318	43.2238	79	8	8	17	2	8	43	36	8
	08	84.6669C	84C	84.6669	25.6541	110.3210	58.5114	168.8324	43.0642	57	6	6	12	1	6	31	26	8
합 계										302	30	30	72	9	30	171	131	34

#### ■ 주택형의 표시 안내

주택형	50.9871	59.9648A	59.9760B	59.9740C	78.9895	84.9012A	84.9807B	84.6669C
약식표기	50	59A	59B	59C	78	84A	84B	84C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sup>2</sup>) × 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만을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실, 기계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특별공급 청약 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므로,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50	59A	59B	59C	78	84A	84B	84C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1	0	0	1	0	1	1	5
	장기복무 제대군인	0	0	1	0	1	0	1	0	3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0	0	0	0	1	0	0	0	1
	중소기업 근로자	0	1	1	1	1	1	2	1	8
	장애인	1	1	1	0	2	0	4	4	1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	3	3	1	6	1	8	6	30
신혼부부 특별공급		7	7	8	4	13	4	17	12	7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1	1	0	2	0	2	1	9
생애최초 특별공급		2	3	3	1	6	1	8	6	30
합 계		15	17	18	7	33	7	43	31	171

■ 공급금액표

주택형	약식표기	동/호별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소계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2025.12.22.	2026.05.15.	2026.10.15.	2027.04.15.	2027.11.15.	2028.06.15.			
50.9871	50	110동 4,5호	1층	1	177,024,500	309,975,500	487,000,000	10,000,000	14,35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170,450,000	
			2층	2	177,751,500	311,248,500	489,000,000	10,000,000	14,45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171,150,000
			3층	2	178,842,000	313,158,000	492,000,000	10,000,000	14,6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172,200,000
			4층	2	179,569,000	314,431,000	494,000,000	10,000,000	14,7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172,900,000
			5~9층	9	180,296,000	315,704,000	496,000,000	10,000,000	14,8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173,600,000
			10~13층	7	181,386,500	317,613,500	499,000,000	10,000,000	14,95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174,650,000
59.9648A	59A	107동 3호 108동 4,5호 110동 3호	1층	2	221,008,000	386,992,000	608,000,000	10,000,000	20,4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212,800,000	
			2층	3	222,098,500	388,901,500	611,000,000	10,000,000	20,55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213,850,000	
			3층	3	223,189,000	390,811,000	614,000,000	10,000,000	20,7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214,900,000	
			4층	3	224,279,500	392,720,500	617,000,000	10,000,000	20,85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215,950,000	
			5~9층	2	225,370,000	394,630,000	620,000,000	10,000,000	21,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217,000,000	
			10~14층	5	226,460,500	396,539,500	623,000,000	10,000,000	21,15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218,050,000	
			15~19층	4	227,551,000	398,449,000	626,000,000	10,000,000	21,3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219,100,000
			20~27층	1	228,641,500	400,358,500	629,000,000	10,000,000	21,45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220,150,000
		110동 1호	1층	1	221,008,000	386,992,000	608,000,000	10,000,000	20,4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212,800,000	

			2층	1	222,098,500	388,901,500	611,000,000	10,000,000	20,55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213,850,000	
			3층	1	223,189,000	390,811,000	614,000,000	10,000,000	20,7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214,900,000
			5~9층	1	225,370,000	394,630,000	620,000,000	10,000,000	21,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217,000,000
			10~14층	1	226,460,500	396,539,500	623,000,000	10,000,000	21,15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218,050,000
59.9760B	59B	107동 2호 110동 2호	1층	2	226,824,000	397,176,000	624,000,000	10,000,000	21,2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218,400,000
			2층	2	227,914,500	399,085,500	627,000,000	10,000,000	21,35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219,450,000
			3층	2	229,005,000	400,995,000	630,000,000	10,000,000	21,5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220,500,000
			4층	2	230,095,500	402,904,500	633,000,000	10,000,000	21,65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221,550,000
			5~9층	8	231,186,000	404,814,000	636,000,000	10,000,000	21,8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222,600,000
			10~14층	9	232,276,500	406,723,500	639,000,000	10,000,000	21,95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223,650,000
			15~19층	7	233,367,000	408,633,000	642,000,000	10,000,000	22,1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224,700,000
			20~21층	1	234,457,500	410,542,500	645,000,000	10,000,000	22,25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225,750,000
59.9740C	59C	107동 4호	1층	1	218,100,000	381,900,000	600,000,000	10,000,000	2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210,000,000	
			2층	1	219,190,500	383,809,500	603,000,000	10,000,000	20,15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211,050,000	
			3층	1	220,281,000	385,719,000	606,000,000	10,000,000	20,3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212,100,000	
			4층	1	221,371,500	387,628,500	609,000,000	10,000,000	20,45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213,150,000
			5~9층	3	222,462,000	389,538,000	612,000,000	10,000,000	20,6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214,200,000
			10~14층	2	223,552,500	391,447,500	615,000,000	10,000,000	20,75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215,250,000
			15~17층	2	224,643,000	393,357,000	618,000,000	10,000,000	20,900,000	61,800,000	61,800,000	61,800,000	61,800,000	61,800,000	61,800,000	61,800,000	216,300,000
78.9895	78	105동 3호	1층	1	274,079,000	479,921,000	754,000,000	10,000,000	27,700,000	75,400,000	75,400,000	75,400,000	75,400,000	75,400,000	75,400,000	263,900,000	
			5~9층	5	279,531,500	489,468,500	769,000,000	10,000,000	28,45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269,150,000	
			10~14층	3	280,985,500	492,014,500	773,000,000	10,000,000	28,650,000	77,300,000	77,300,000	77,300,000	77,300,000	77,300,000	77,300,000	270,550,000	
			15~19층	2	282,076,000	493,924,000	776,000,000	10,000,000	28,8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271,600,000	
			20~29층	7	283,530,000	496,470,000	780,000,000	10,000,000	29,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273,000,000
		106동 1,3호 107동 1호	1층	2	272,625,000	477,375,000	750,000,000	10,000,000	27,5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262,500,000
			2층	3	274,079,000	479,921,000	754,000,000	10,000,000	27,700,000	75,400,000	75,400,000	75,400,000	75,400,000	75,400,000	75,400,000	75,400,000	263,900,000
			3층	2	275,169,500	481,830,500	757,000,000	10,000,000	27,85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264,950,000

			4층	2	276,623,500	484,376,500	761,000,000	10,000,000	28,05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266,350,000	
			5~9층	8	278,077,500	486,922,500	765,000,000	10,000,000	28,25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267,750,000
			10~14층	7	279,531,500	489,468,500	769,000,000	10,000,000	28,45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269,150,000
			15~19층	4	280,622,000	491,378,000	772,000,000	10,000,000	28,6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270,200,000
			20~29층	12	282,076,000	493,924,000	776,000,000	10,000,000	28,8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271,600,000
			30층 이상	2	283,530,000	496,470,000	780,000,000	10,000,000	29,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273,000,000
84.9012A	84A	101동 3호 102동 3호	1층	1	302,068,500	528,931,500	831,000,000	10,000,000	31,55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290,850,000
			2층	2	303,886,000	532,114,000	836,000,000	10,000,000	31,8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292,600,000
			3층	1	305,340,000	534,660,000	840,000,000	10,000,000	32,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294,000,000
			4층	1	306,794,000	537,206,000	844,000,000	10,000,000	32,2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295,400,000
		108동 2호 109동 2호	1층	2	300,614,500	526,385,500	827,000,000	10,000,000	31,35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289,450,000
			2층	1	302,068,500	528,931,500	831,000,000	10,000,000	31,55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290,850,000
			3층	1	303,886,000	532,114,000	836,000,000	10,000,000	31,8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292,600,000
			4층	2	305,340,000	534,660,000	840,000,000	10,000,000	32,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294,000,000
84.9807B	84B	101동 4호 102동 4호 103동 4호 104동 4호 105동 2호	1층	5	299,524,000	524,476,000	824,000,000	10,000,000	31,200,000	82,400,000	82,400,000	82,400,000	82,400,000	82,400,000	82,400,000	82,400,000	288,400,000
			2층	4	300,978,000	527,022,000	828,000,000	10,000,000	31,4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289,800,000
			3층	4	302,432,000	529,568,000	832,000,000	10,000,000	31,6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291,200,000
			4층	4	303,886,000	532,114,000	836,000,000	10,000,000	31,8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292,600,000
			5~9층	2	305,340,000	534,660,000	840,000,000	10,000,000	32,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294,000,000
			10~14층	11	307,157,500	537,842,500	845,000,000	10,000,000	32,250,000	84,500,000	84,500,000	84,500,000	84,500,000	84,500,000	84,500,000	84,500,000	295,750,000
			15~19층	7	308,611,500	540,388,500	849,000,000	10,000,000	32,45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297,150,000
			20~29층	10	310,065,500	542,934,500	853,000,000	10,000,000	32,650,000	85,300,000	85,300,000	85,300,000	85,300,000	85,300,000	85,300,000	85,300,000	298,550,000
			30층 이상	2	311,519,500	545,480,500	857,000,000	10,000,000	32,850,000	85,700,000	85,700,000	85,700,000	85,700,000	85,700,000	85,700,000	85,700,000	299,950,000
		106동 2호 108동 1호 109동 1호	1층	3	298,070,000	521,930,000	820,000,000	10,000,000	31,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287,000,000
			2층	3	299,524,000	524,476,000	824,000,000	10,000,000	31,200,000	82,400,000	82,400,000	82,400,000	82,400,000	82,400,000	82,400,000	82,400,000	288,400,000
			3층	3	300,978,000	527,022,000	828,000,000	10,000,000	31,4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289,800,000
			4층	3	302,432,000	529,568,000	832,000,000	10,000,000	31,6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291,200,000

			10~14층	5	305,340,000	534,660,000	840,000,000	10,000,000	32,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294,000,000		
			15~19층	3	306,794,000	537,206,000	844,000,000	10,000,000	32,2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295,400,000		
			20~29층	7	308,248,000	539,752,000	848,000,000	10,000,000	32,400,000	84,800,000	84,800,000	84,800,000	84,800,000	84,800,000	84,800,000	296,800,000		
			30층 이상	3	310,065,500	542,934,500	853,000,000	10,000,000	32,650,000	85,300,000	85,300,000	85,300,000	85,300,000	85,300,000	85,300,000	298,550,000		
84.6669C	84C	101동 1,2호 103동 1,2호 104동 1,2호 105동 1호	1층	3	296,252,500	518,747,500	815,000,000	10,000,000	30,750,000	81,500,000	81,500,000	81,500,000	81,500,000	81,500,000	81,500,000	81,500,000	285,250,000	
			2층	7	297,706,500	521,293,500	819,000,000	10,000,000	30,95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286,650,000
			3층	5	299,160,500	523,839,500	823,000,000	10,000,000	31,15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288,050,000
			4층	5	300,614,500	526,385,500	827,000,000	10,000,000	31,35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289,450,000
			5~9층	4	302,068,500	528,931,500	831,000,000	10,000,000	31,55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290,850,000
			10~14층	5	303,886,000	532,114,000	836,000,000	10,000,000	31,8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292,600,000
			15~19층	6	305,340,000	534,660,000	840,000,000	10,000,000	32,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294,000,000
		20~29층	3	306,794,000	537,206,000	844,000,000	10,000,000	32,2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295,400,000	
		108동 3호 109동 3,4호	2층	3	296,252,500	518,747,500	815,000,000	10,000,000	30,750,000	81,500,000	81,500,000	81,500,000	81,500,000	81,500,000	81,500,000	81,500,000	81,500,000	285,250,000
			3층	3	297,706,500	521,293,500	819,000,000	10,000,000	30,95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286,650,000
			4층	3	299,160,500	523,839,500	823,000,000	10,000,000	31,15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288,050,000
			5~9층	3	300,614,500	526,385,500	827,000,000	10,000,000	31,35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289,450,000
			10~14층	2	302,068,500	528,931,500	831,000,000	10,000,000	31,55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290,850,000
			15~19층	3	303,522,500	531,477,500	835,000,000	10,000,000	31,750,000	83,500,000	83,500,000	83,500,000	83,500,000	83,500,000	83,500,000	83,500,000	83,500,000	292,250,000
20~29층	1		304,976,500	534,023,500	839,000,000	10,000,000	31,950,000	83,900,000	83,900,000	83,900,000	83,900,000	83,900,000	83,900,000	83,900,000	83,900,000	293,650,000		
30층 이상	1	306,794,000	537,206,000	844,000,000	10,000,000	32,2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295,400,000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타입별, 동별, 층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인지세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인지세의 경우 사업주체 및 분양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각각50%)납부하여야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 체결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상가 대지지분을 제외한 아파트 대지지분에 대한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모집공고상의 면적은 제곱미터(m<sup>2</sup>)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되며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대로 0.0001m<sup>2</sup> 단위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함.

이에 따라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입니다.

**4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모부부양	<p>'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p>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b>* 기존주택 처분 조건</b>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li> <li>-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li> <li>-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li> </ul> </div>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p>-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p> <p>-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p> <p>-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p>-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인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p>-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0세대

구분	내용
----	----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li> </ul>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li> <li>■ 장애인 :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li> <li>■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li> <li>■ 중소기업 근로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li> </ul> </li> <li>■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li> </ul> </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li> <li>■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li> <li>■ ②배점</li> </ul>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3항 기준 적용)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7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 주택 세대 구성원</li> <li>■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li> <li>■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당첨자 선정 순서</b>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li> <li>■ <b>①소득구분</b></li> </ul>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9.19.(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비고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td>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td>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b>■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b> 에 거주하거나 <b>울산광역시</b> 및 <b>경상남도에</b>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b>■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b>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b>■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b> - 청약통장 가입기간 <b>6개월</b>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b>■ 당첨자 선정 순서</b>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b>■ ①지역</b>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b>■ ②가점</b>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3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li> <li>※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li> </ul> </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ul> </li> <li>■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li> <li>-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li> <li>*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li> </ul> </li> </ul>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9.19.(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9,366,907원~	11,151,515원~	11,740,363원~	12,653,013원~	13,565,662원~	14,478,312원~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li> <li>■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li> </ul>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1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ol> </li> <li>-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li> </ul>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p>■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비율</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추첨제 물량의 75%</td> <td>무주택세대구성원</td> </tr> <tr> <td>2단계</td> <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 </tr> <tr> <td>3단계</td> <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 </tr> </tbody> </table>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비고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li> <li>-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li> </ul>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5.09.29.(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li> <li>• 힐스테이트 사직 아시아드 견본주택</li> <li>-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11</li> </ul>
일반공급	1순위	2025.9.30.(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li> </ul>
	2순위	2025.10.01.(수) 09:00~17:30		
당첨자 발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1순위,2순위)	2025.10.16.(목)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ul>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사업주체 계약처 또는 은행창구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b>본인 신청 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b>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b>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 방식</th> <th style="text-align: center;">본인서명 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 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 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li> <li>※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합니다.</li> <li>※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li> </ul>				
<b>■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b>				
<b>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li> <li>-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b>이용방법</b>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li> </ul>			

<p><b>공고단지 청약연습</b></p>	<p>-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p> <p>-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p> <p>- <b>이용방법</b>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p>	
<p><b>당첨자발표 서비스</b></p>	<p><b>청약홈</b></p>	<p>- <b>조회방법</b>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p> <p>- <b>조회기간 : 2025.10.16.(목) ~ 2025.10.25(토) (10일간)</b></p> <p>-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p> <p>-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p> <p>-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p>
	<p><b>문자</b></p>	<p>- <b>제공일시</b> : 2025.10.16.(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p> <p>- <b>제공대상</b>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p> <p>* <b>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b></p> <p>-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p><b>■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일정</b></p>	
<p>서류제출 및 심사기간</p>	<p><b>2025.10.17.(금) ~ 2025.10.23.(목) 10:00~17:00까지</b></p>
<p>대상자</p>	<p>특별공급, 일반공급(1, 2순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p>
<p>제출장소</p>	<p>힐스테이트 사직아시아드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11)</p>
<p>유의사항</p>	<p>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p>
<p>• 주택의 공급계약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p> <p>•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p> <p>•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p> <p>•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p> <p>•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p> <p>•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분양사무실을 방문, 청약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p> <p>•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분양사무실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배우자, 직계속·비속 등)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일정기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p>	

■ 계약체결 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유의사항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09. 19.) 이후 발급분에 한 합니다.
-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인 경우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격확인 서류 및 소명자료 미제출 시 계약체결일에 계약이 불가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분양사무실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 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확인 서류접수는 힐스테이트 사직아시아드 견본주택에 상기 해당기간 내에 방문하여 제출(제출기간 이후 자격확인 서류제출 불가)하여야 하며, 당첨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1명만 제출 가능 합니다.
- 자격확인 서류 제출 후 추가로 소명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될 경우 청약신청 시 입력한 전화번호로 안내전화를 드릴 예정이며, 청약신청 시 입력한 전화번호가 상이할 경우 부적격 사항에 대해 추가 안내를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되며, 이때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사업주체 및 당사에 명확히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간 당첨 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자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공통서류 (예비입주자 포함)	○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인터넷 청약(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무주택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발급용(용도: 당첨자 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공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시는 제출 생략 (대리인 위임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본인	• 인터넷청약(청약홈)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서비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익일부터 발급가능(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li>· 기록대조일 : "제출 대상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인 경우 생략 가능</li> </ul>
	○	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공급을 받으려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li> <li>-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li> </ul>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해외근로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li> <li>·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li> <li>·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li> <li>·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②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li> <li>※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li> <li>※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li> </ul>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li>· 기록대조일 : "제출 대상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li> </ul>
기관추천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 가구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자녀	·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 된 경우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자녀	·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 로 발급 · 만 18세 이상 ~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 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li> <li>-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li> <li>- 조회기간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 ~ 입주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li> <li>※ 단, 직계존속은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li> </ul>
	○	소득증빙서류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기본 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비사업자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사실증명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전년도 소득신고 사실이 없는 경우
	○	부동산 소유현황 또는 부동산세 완납증명서(건물+토지)	본인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li> <li>•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li>•기록대조일 : "제출 대상자의 생년월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li> </ul>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li> <li>-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li> </ul>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li> <li>-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li> <li>•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생애최초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재직증명서 필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사실증명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전년도 소득신고 사실이 없는 경우
	○	부동산 소유현황 또는 부동산세 완납증명서(건물+토지)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본 1통이 필요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가 확인되어야 하며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자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택공급 신청서	본인	인터넷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외
	○		인감증명서	본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 불가) ※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시는 제출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청약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일자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및 세대주 여부를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가점제 당첨자 (예비입주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 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자녀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만30세 이전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자녀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은 피부양 직계존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피부양 직계비속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은 피부양 직계존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인터넷청약자는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제출 생략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당첨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당첨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		인감도장	당첨자	
	○		위임장	당첨자	
	○		신분증	대리인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참조)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표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적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직인날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규취업자 / 금년도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 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①,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③ 전년도 재무재표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②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②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직인날인)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연금 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확인각서 ② 사실증명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견본주택비치 ② 국세청 또는 홈택스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구분	확인 자격	증빙 제출 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①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 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세무서, 해당직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입증 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 ①~④ 중 해당서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 환급 확인자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추가 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④ 납세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④ 세무서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하여야 함.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장소	계약기간	문의 전화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힐스테이트 사직아시아드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11)	2025.10.27(월) ~ 2025.10.29(수)	1551-8235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	자격검증서류 일체	본인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당첨자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추가 개별통지서류	본인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 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용(※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당첨자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	계약금 입금증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견본주택에서 현금 수납 불가)
	○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견본주택 내 비치 ※ 6억원 이상 주택형의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계약 시 의무 작성
	○	-	인지세	본인	•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1/2씩 균등 부담(※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자)		
대리인 계약 시	※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일체 외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불가
	○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	위임장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 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8항에 의거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 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 기관의 전산 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되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에 대해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해제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제외)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 (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명확히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해제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실제 키폭출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 중 선 도래하는 날부터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키폭출 여부,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입주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계약자(입주자)의 관리부재, 부주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피해와 리스크에 대해서도 계약자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합니다.
- 입주증발급 전 계약자(입주자)가 무단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여 발생하는 내부 마감재에 대한 훼손 및 손상실, 기타 화재나 작업중 발생하는 누수사고(타세대 피해보상 포함)를 포함한 모든 하자 및 안전사고에 대해서 계약자(입주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입주자)가 시행한 인테리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불가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실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사용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지지분은 용도별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청약신청 시 입력한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힐스테이트 사직아시아드 견본주택(1551-8235)으로 변경된 연락처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된 연락처 미통보에 따른 추첨일정 등 추가 안내사항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안내사항에 대해 안내받지 못할 경우 당사 및 사업주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 시 반드시 청약 신청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자 및 미계약 세대에 대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주택형별 예비순번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자 및 미계약 세대에 대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주택형별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최초 계약 시)	하나은행	2019-30967-02337	사직1의6지구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중도금, 잔금		계약 체결 시 개별 가상계좌 부여		

■ **납부 유의사항**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301동 1101호 홍길동'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3011101홍길동'으로 기재)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금 납부 가상계좌 및 공급계약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모계좌(하나은행 201-910039-60604 예금주 : 사직1의6지구재건축정비사업조합)로 관리됩니다.
- 상기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비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와 무관합니다. 또한 선수관리비를 미납한 경우 열쇠 수령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임시사용검사 또는 동별 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여야 하고, 전체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 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거래가(분양대금+발코니 확장 대금+추가 선택 품목 대금+프리미엄 등)을 기재 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대금의 60%(중도금)에 한해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신청 시 대출취급기관 등에 의거 분양대금의 5%(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이자후불제를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이자납부일까지는 사업주체가 납부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입주지정기간 내 미납시에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합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분: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달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0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은 사업주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오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발코니 미확장 요구 및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 금액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시공 중으로 발코니 비확장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변경 등 일체의 추가공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요구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시설은 확장공사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입주 후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적합하도록 시공 되어야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입주자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입주 후 발코니를 임의로 개별 변경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시공자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 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 또는 거실 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고 계약 전 명확히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외부창은 단창으로 설치되며, 외부측 벽체 및 일부 천장에 결로방지를 위해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후 실내 습도 등 생활 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예

■ 공간특화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안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납부	2026.04.15	입주지정기간
59A	주방 공간특화	'주방공간특화('ㄱ'자 아일랜드 + 유리상부장 + 간접조명) + 주방컬렉션 1 + 빌트인냉장고(삼성)	10,890,000	1,089,000	1,089,000	8,712,000
59B			11,760,000	1,176,000	1,176,000	9,408,000
84B			15,390,000	1,539,000	1,539,000	12,312,000
59A		'주방공간특화('ㄱ'자 아일랜드 + 유리상부장 + 간접조명) + 주방컬렉션 1 + 빌트인냉장고(LG)	11,010,000	1,101,000	1,101,000	8,808,000
59B			11,880,000	1,188,000	1,188,000	9,504,000
84B			15,510,000	1,551,000	1,551,000	12,408,000
59A		'주방공간특화('ㄱ'자 아일랜드 + 유리상부장 + 간접조명) + 주방컬렉션 2 + 빌트인냉장고(삼성)	11,660,000	1,166,000	1,166,000	9,328,000
59B			12,650,000	1,265,000	1,265,000	10,120,000
84B			16,910,000	1,691,000	1,691,000	13,528,000
59A		'주방공간특화('ㄱ'자 아일랜드 + 유리상부장 + 간접조명) + 주방컬렉션 2 + 빌트인냉장고(LG)	11,780,000	1,178,000	1,178,000	9,424,000
59B			12,770,000	1,277,000	1,277,000	10,216,000
84B			17,030,000	1,703,000	1,703,000	13,624,000
59C	주방공간특화(빅 아일랜드 + 유리상부장 + 간접조명) + 주방컬렉션 1 + 빌트인냉장고(삼성)	10,670,000	1,067,000	1,067,000	8,536,000	
		10,790,000	1,079,000	1,079,000	8,632,000	
		12,260,000	1,226,000	1,226,000	9,808,000	
		12,380,000	1,238,000	1,238,000	9,904,000	
59A	침실1 공간특화	침실1 슬라이딩 도어 +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 알파룸	5,170,000	517,000	517,000	4,136,000
84B		슬라이딩 도어 + 벽부형 드레스룸 + 알파룸	5,910,000	591,000	591,000	4,728,000
59B	침실2,3 공간특화	슬라이딩 도어 + 양문형 불박이장 + 무빙 책상	6,260,000	626,000	626,000	5,008,000
59C			5,420,000	542,000	542,000	4,336,000
84A			6,400,000	640,000	640,000	5,120,000

84B			6,590,000	659,000	659,000	5,272,000
-----	--	--	-----------	---------	---------	-----------

■ **현관중문**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안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납부	2026.04.15	입주지정기간
59A, 59B, 59C, 78, 84A, 84B	3연동 현관중문	수동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59A, 59B, 59C, 78, 84A, 84B		자동	2,360,000	236,000	236,000	1,888,000
50, 84C	양개형 현관중문	수동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 **현관 컬렉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안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납부	2026.04.15	입주지정기간
59A	현관 컬렉션 I (현관중문 수동형)	수동형 현관 중문(3연동) + 천장/벽시트판넬 + 신발장 하부조명 + 도어 마감 고급화 + 현관 팬트리 고급화(UMS-SD)	3,560,000	356,000	356,000	2,848,000
59B			3,630,000	363,000	363,000	2,904,000
59C			3,640,000	364,000	364,000	2,912,000
78			3,840,000	384,000	384,000	3,072,000
84A			4,950,000	495,000	495,000	3,960,000
84B			4,790,000	479,000	479,000	3,832,000
50			수동형 현관 중문(양개형) + 천장/벽시트판넬 + 신발장 하부조명 + 도어 마감 고급화 + 현관 팬트리 고급화(UMS-SD)	3,260,000	326,000	326,000
84C	5,250,000	525,000		525,000	4,200,000	
59A	현관 컬렉션 II (현관중문 자동형)	3연동 자동 중문 + 천장/벽시트판넬 + 신발장 하부조명 + 도어 마감 고급화 + 현관 팬트리 고급화(UMS-SD)		4,720,000	472,000	472,000
59B			4,790,000	479,000	479,000	3,832,000
59C			4,800,000	480,000	480,000	3,840,000
78			5,000,000	500,000	500,000	4,000,000
84A			6,110,000	611,000	611,000	4,888,000
84B			5,950,000	595,000	595,000	4,760,000

■ **현관 에어샤워 시스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납부	2026.04.15	입주지정기간
59A, 59B, 59C, 78, 84A, 84B, 84C	현관 에어샤워 시스템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 거실 컬렉션 I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안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납부	2026.04.15	입주지정기간
50	거실 컬렉션 I	아트월(세라믹타일+픽처레일) + 소파뒷벽 세라믹타일 + 복도 시트판넬	11,610,000	1,161,000	1,161,000	9,288,000
	거실 컬렉션 I + 현관 컬렉션 시		11,490,000	1,149,000	1,149,000	9,192,000
59A	거실 컬렉션 I		9,490,000	949,000	949,000	7,592,000
	주방공간특화 시		9,590,000	959,000	959,000	7,672,000
	침실1 공간특화 시		9,050,000	905,000	905,000	7,240,000
59B	거실 컬렉션 I		10,000,000	1,000,000	1,000,000	8,000,000
	주방공간특화 시		10,130,000	1,013,000	1,013,000	8,104,000
	침실2,3 공간특화 시		9,680,000	968,000	968,000	7,744,000
59C	거실 컬렉션 I or 주방공간특화 시		11,000,000	1,100,000	1,100,000	8,800,000
	침실1 공간특화 시		10,680,000	1,068,000	1,068,000	8,544,000
78	거실 컬렉션 I		11,860,000	1,186,000	1,186,000	9,488,000
84A	거실 컬렉션 I		11,610,000	1,161,000	1,161,000	9,288,000
	침실2,3 공간특화 시		11,150,000	1,115,000	1,115,000	8,920,000
84B	거실 컬렉션 I or 침실1 공간특화 시		11,250,000	1,125,000	1,125,000	9,000,000
	주방공간 특화 시		10,640,000	1,064,000	1,064,000	8,512,000

	침실2,3 공간특화 시		10,580,000	1,058,000	1,058,000	8,464,000
84C	거실 컬렉션 I		14,240,000	1,424,000	1,424,000	11,392,000
	거실 컬렉션 I + 현관 컬렉션 시		13,970,000	1,397,000	1,397,000	11,176,000

■ 주방 컬렉션 I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안 (※ 주방공간특화시 선택불가)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납부	2026.04.15	입주지정기간
50	주방컬렉션 I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베인) + 상부장 유리도어 + 상하부장 라인 조명 + 우물천정 + 간접조명4	3,380,000	338,000	338,000	2,704,000
59A	주방컬렉션 I or 침실1 공간특화 시		4,470,000	447,000	447,000	3,576,000
59B	주방컬렉션 I or 침실1 공간특화 시		4,960,000	496,000	496,000	3,968,000
78	주방컬렉션 I		5,460,000	546,000	546,000	4,368,000
84A	주방컬렉션 I or 침실2,3 공간특화 시		6,010,000	601,000	601,000	4,808,000
84B	주방컬렉션 I or 침실1 or 침실2,3 공간특화 시		6,170,000	617,000	617,000	4,936,000
84C	주방컬렉션 I		5,970,000	597,000	597,000	4,776,000
59C	주방컬렉션 I or 침실1 공간특화 시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베인) + 상부장 유리도어 + 상하부장 라인 조명	4,470,000	447,000	447,000

■ 주방 컬렉션 II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안 (※ 주방공간특화시 선택불가)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납부	2026.04.15	입주지정기간
50	주방컬렉션 II	벽/상판 세라믹타일 + 상부장 유리도어 + 상하부장 라인 조명 + 우물천정 + 간접조명	3,960,000	396,000	396,000	3,168,000
59A	주방컬렉션 II or 침실1 공간특화 시		5,170,000	517,000	517,000	4,136,000
59B	주방컬렉션 II or 침실 1 공간특화 시		5,710,000	571,000	571,000	4,568,000
78	주방컬렉션 II		6,350,000	635,000	635,000	5,080,000
84A	주방컬렉션 II or 침실2,3 공간특화 시		7,060,000	706,000	706,000	5,648,000
84B	주방컬렉션 II or 침실1 or 침실2,3 공간특화 시		7,190,000	719,000	719,000	5,752,000
84C	주방컬렉션 II		6,900,000	690,000	690,000	5,520,000

59C	주방컬렉션 II or 침실 1 공간특화 시	벽/상판 세라믹타일 + 상부장 유리도어 + 상하부장 라인 조명	5,260,000	526,000	526,000	4,208,000
-----	----------------------------	------------------------------------	-----------	---------	---------	-----------

■ 바닥컬렉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안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납부	2026.04.15	입주지정기간
50	바닥 컬렉션 I	광폭 강마루	590,000	59,000	59,000	472,000
59A, 59B			680,000	68,000	68,000	544,000
59C			720,000	72,000	72,000	576,000
78			930,000	93,000	93,000	744,000
84A			1,040,000	104,000	104,000	832,000
84B, 84C			1,010,000	101,000	101,000	808,000
50			바닥 컬렉션 II	원목 마루	3,170,000	317,000
59A	3,670,000	367,000			367,000	2,936,000
59B	3,680,000	368,000			368,000	2,944,000
59C	3,880,000	388,000			388,000	3,104,000
78	5,000,000	500,000			500,000	4,000,000
84A	5,600,000	560,000			560,000	4,480,000
84B, 84C	5,450,000	545,000			545,000	4,360,000

■ 주방수전 고급화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납부	2026.04.15	입주지정기간
전타입	아메리칸 스탠다드(FD1810-0KAKB11AT)	210,000	21,000	21,000	168,000

■ 욕실 컬렉션(전 욕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납부	2026.04.15	입주지정기간
50	욕실 1 : 포세린타일 벽/바닥 + 세면대 고급화 + 욕조	3,260,000	326,000	326,000	2,608,000

59A, 59B	욕실 1 : 포세린타일 벽/바닥 + 세면대 고급화 + 욕조 욕실 2 : 포세린타일 벽/바닥 + 세면대 고급화 + 브론즈 무광 샤워부스	6,870,000	687,000	687,000	5,496,000
59C		6,900,000	690,000	690,000	5,520,000
78		6,870,000	687,000	687,000	5,496,000
84A		6,930,000	693,000	693,000	5,544,000
84B, 84C		6,960,000	696,000	696,000	5,568,000

■ **드레스룸 컬렉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납부	2026.04.15	입주지정기간
59A, 84C	후면 기동형 시스템 선반 + 유리도어	960,000	96,000	96,000	768,000
78		980,000	98,000	98,000	784,000
84A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84B (침실1 공간특화시 선택불가)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 **가구 컬렉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납부	2026.04.15	입주지정기간	
78	침실2 반침장 (침실2,3 공간특화 시 선택불가)	1,330,000	133,000	133,000	1,064,000	
84A, 84B		1,140,000	114,000	114,000	912,000	
84C	침실3 반침장	1,140,000	114,000	114,000	912,000	
50, 59A, 59C	침실 1 불박이장	슬라이딩 불박이장	3,960,000	396,000	396,000	3,168,000
84A			4,360,000	436,000	436,000	3,488,000
84C			4,640,000	464,000	464,000	3,712,000
59B		여단이 불박이장	3,960,000	396,000	396,000	3,168,000
84B		슬라이딩 + 여단이 불박이장 (침실1 공간특화 시 선택불가)	4,530,000	453,000	453,000	3,624,000
78		슬라이딩 불박이장	4,110,000	411,000	411,000	3,288,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택형	개소 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납부	2026.04.15	입주지정기간	
일반형	부분	50,59A(침실1공간특화) 59A,59B,59C	2개소(거실, 침실1)	3,630,000	363,000	363,000	2,904,000

		78	3개소(거실, 침실1, 주방)	3,850,000	385,000	385,000	3,080,000
		84A, 84B		5,390,000	539,000	539,000	4,312,000
		84C		5,610,000	561,000	561,000	4,488,000
	전실	50, 59A(침실1 공간특화)	3개소(거실, 침실1, 침실2)	5,170,000	517,000	517,000	4,136,000
		59A,59B,59C	4개소(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6,930,000	693,000	693,000	5,544,000
		78		7,260,000	726,000	726,000	5,808,000
		84A		6개소(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주방)	10,890,000	1,089,000	1,089,000
		84B	5개소(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주방)	9,240,000	924,000	924,000	7,392,000
		84C		9,350,000	935,000	935,000	7,480,000
		공기청정형	부분	50,59A(침실1공간특화) 59A,59B,59C	2개소(거실, 침실1)	4,230,000	423,000
78	4,450,000			445,000		445,000	3,560,000
84A, 84B	3개소(거실, 침실1, 주방)			6,290,000	629,000	629,000	5,032,000
84C				6,510,000	651,000	651,000	5,208,000
전실	50,59A(침실1 공간특화)		3개소(거실, 침실1, 침실2)	6,070,000	607,000	607,000	4,856,000
	59A,59B,59C		4개소(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8,130,000	813,000	813,000	6,504,000
	78			8,460,000	846,000	846,000	6,768,000
	84A			6개소(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주방)	12,690,000	1,269,000	1,269,000
	84B		5개소(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주방)	10,740,000	1,074,000	1,074,000	8,592,000
	84C			10,850,000	1,085,000	1,085,000	8,680,000

- 상기 시스템 에어컨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옵션 금액은 주택 공급 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선택옵션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추가 신청 및 계약변경(신규,해지)이 불가하며,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일은 추후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 겸용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며, 본 시공 시 냉방 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됩니다.
- 본 시공 시 설치되는 제품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장비로부터 운전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타입별·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점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구, 환기 설비, 천장 구조, 소방시설물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계약시 평형별 실내기 설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미선택 시, 냉매 매립배관이 제공됩니다. (거실 스탠드형 기준 1개소, 안방 벽걸이형 기준 1개소)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천장형 에어컨 냉매배관 및 드레인 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설치안에 따라 실외기 용량이 상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설치 개소 및 소요 용량에 적절한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입주 후 별도 구매하여 설치하는 경우, 해당 에어컨은 각 실 온도조절기 및 월패드(홈네트워크)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 수준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 품목은 본 주택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입주 후 별도로 에어컨을 구매하여 설치하는 경우, 해당 에어컨은 각 실 온도조절기 및 월패드(홈네트워크)와 연동되지 않는다.

■ 환기청정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납부	2026.04.15	입주지정기간
78, 84A, 84B, 84C	살균 청정 환기시스템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 빌트인 냉장고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주방공간 특화시 선택불가)	품목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납부	2026.04.15	입주지정기간
전타입	비스포크(코타화이트) / 냉동, 냉장, 김치냉장고 (RR40C7895AP / RZ34C7865AP / RQ34C7845AP) + 인출하드웨어장	삼성전자	5,960,000	596,000	596,000	4,768,000
전타입	오브제(미스티 베이지) / 냉동, 냉장, 김치냉장고 (BC1L2AA / BC1F2AA / BC1K3AA) + 인출하드웨어장	LG전자	6,080,000	608,000	608,000	4,864,000

■ 주방가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납부	2026.04.15	입주지정기간
전타입	3구 인덕션_쿠첸(CEN-IF3A0NBA)	(주)쿠첸	400,000	40,000	40,000	320,000
	기능성 오븐_삼성(NQ36A6555CK)	삼성전자	320,000	32,000	32,000	256,000
59A, 59B, 59C, 78, 84A, 84B, 84C	식기세척기_삼성(DW80F71Y1SEW)	삼성전자	850,000	85,000	85,000	680,000

-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공간은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제품이 제공되는 가구의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냉장고의 돌출정도는 제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옵션 선택 시 팬트리장(수납특화 서랍장)이 맞춤 구성 세트에 판매되며, 상품의 조합 및 설치, 모델, 디자인, 색상에 대한 개별선택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 빌트인 냉장고장 옵션 미선택 시 오픈형 냉장고장이 확장 시 설치되며, 도어는 설치되지 않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내 안내 및 분양홍보물과 옵션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가구도어 부착형) 도어는 주방가구와 동일한 가구패널로 마감됩니다.(옵션 미선택 시 해당 위치에 공간특화 미선택시 하부 수납장이 적용됨)
- 주방가전 추가 선택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명확히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안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납부	2026.04.15	입주지정기간
전 타입	세탁실 선반	2단 세탁선반	100,000	10,000	10,000	80,000
50	조명 컬렉션 1	거실 리니어 조명(디밍/색온도 조절) + 안방 특화 조명 + 13인치 월패드	3,840,000	384,000	384,000	3,072,000
59A, 59B, 59C			4,110,000	411,000	411,000	3,288,000
78, 84A, 84B			4,980,000	498,000	498,000	3,984,000
84C			5,470,000	547,000	547,000	4,376,000
59A, 59B, 59C, 78	조명 컬렉션 2	주방 싱크대 옵션등 + 펜던트형 블루투스 스피커 식탁등	1,910,000	191,000	191,000	1,528,000
84A, 84B, 84C			3,520,000	352,000	352,000	2,816,000
전 타입	안심 컬렉션	H BELL(거실 1개소)	200,000	20,000	20,000	160,000
전 타입		안면 인식 도어폰 + 13인치 월패드	370,000	37,000	37,000	296,000
조명 컬렉션 1 선택 시			300,000	30,000	30,000	240,000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 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유무에 따라 천장 몰딩 및 가구의 형태나 규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불박이 가구로 가려지는 벽, 천장, 바닥은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최초 계약 시)	하나은행	2019-30991-02537	현대건설(주)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ex)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
중도금, 잔금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가상계좌 부여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가상계좌 및 계약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로 납부한 옵션대금은 모계좌(하나은행 201-910039-63504 예금주: 현대건설(주))로 관리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건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건본주택에서 수납 불가/신용카드 결제 불가)
- 잔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예 :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였음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추가 선택품목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 시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 상 문제로 계약체결 후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추가 선택품목은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 바라며,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제품사양 및 판매가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추가 선택품목 공사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된 것으로 합니다. (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추가 선택품목 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11 단지 여건 등

구분	내용
기본 유의 사항	<p>•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건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p> <p>•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양지하시어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p> <p>• 타지역, 타사 또는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건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p> <p>• 단지 내 시설 명칭 및 동표기 등은 관계기관 심의결과 및 인허가 사항에 따라 입주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홈페이지 및 건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p> <p>•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 수준 성능 또는 동급 수준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p> <p>•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p>

처벌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에치금을 예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출토 시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시공 중 천재지변, 전염병,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입주지원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세대 당 대지지분은 기반시설 및 대지면적 확정 측량에 따른 대지면적이 증감되어 세대 당 대지지분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 하여 직접 확인 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 사항으로 향후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견본주택, 사인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 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VR 동영상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견본주택 및 사전에 촬영하여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개관 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홍보 상 부대시설 및 기타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실, 작은도서관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분양홍보자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홍보물상 표현된 지구 내 학교, 공원, 도로계획, 지구경계 등은 관계기관의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향후 실시계획 및 공사 중 변경 또는 연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급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급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고자 하는 동·호수가 동일 타입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면, 마감재리스트 등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 주택형별면적(m<sup>2</sup>) x 0.3025)</li> <li>•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업계획승인도서 현황 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li> <li>• 대지 내 개설된 도로는 입주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확보된 도로로 그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입주자에 있습니다.</li> <li>•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사업계획승인 변경 포함,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li> <li>•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li> <li>• 본 아파트는 향후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 시행 변경인가, 구조재심의(파일기초에서 지내력기초로 변경 등) 등을 거쳐 설계내용 등 변경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설계변경시 사전에 계약자의 동의를 득하며, 아파트 및 부대시설, 각종 시설물 등의 미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계약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분양주택의 담보평가결과 담보부족분이 발생할 때에는 담보부족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액을 계약자가 책임지고 대출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합니다.</li> <li>• 청약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습니다.</li> <li>•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 기준에 따릅니다.</li> <li>• 본 단지의 계약시점에 따라 분양조건(분양가격, 옵션제공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소급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li> <li>• 본 단지의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사업주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합니다.</li> <li>•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 시공사 등에게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입주 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사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 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li> <li>• 외국인(법인·단체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 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로 같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함)</li> <li>나.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li> <li>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 보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li> <li>라.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li> </ul> </li> <li>•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공급금액 납부안내 등을 위한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수신에 동의하며, 사업주체에게 번호 변경 미고지 및 계약자의 휴대폰 수신상태 문제로 인한 SMS 미수신의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않습니다.</li> <li>•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장마, 폭우, 폭설 등), 전염병 발생, 전쟁, 내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또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없고 지체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li> </ul>
입주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자는 공급금액 및 연체료 등 일체의 납부를 기일 내에 완납하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요구한 제반 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li> <li>• 계약자는 입주 시 관리예치금(선수관리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입주, 잔금완납 및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시에는 입</li> </ul>

		<p>주증발급일 또는 키 수령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단지의 입주일은 공사 진행결과에 따라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은 실입주일 이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단, 이경우에도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li> <li>•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5개월, 하자 보수 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27개월)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축소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li> <li>• 본 단지는 동별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도 입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 총액의 90%를 납부하고 입주하여야 하고, 나머지 10%는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계약자가 해당 기간 내 나머지 10%의 금액을 미 납부하였을 경우 공급계약서 제5조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계약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 금액에 대해 계약자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 법적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본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li> </ul>
	설계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 및 이미지(조감도 등)상 표현된 단지명 및 비는 실 시공시 현장 상황에 따라 위치, 개소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설계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계약 시 제시된 공급안내서를 포함한 조감도, 세대평면도 등의 각종 인쇄물·CG(조감도, 투시도) 및 면적, 치수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개소,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는 측량결과, 각종 심의 결과 (건축위원회 심의 등),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오기 등으로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구조·성능·제품의 사양은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위치 등)은 건본주택에 비치된 사업승인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시공은 사용승인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li> <li>• 101~110동별 단위세대(1~4호)의 배치가 상이하므로 계약시 반드시 동호수 배치도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li> <li>•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li> <li>• 천연자재(석재, 무늬목, 원목마루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건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천연석으로 시공 되어 있는 경우 본 시공시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자연적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특기시방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li> <li>•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명, 단지내 시설명칭, 동·호수의 표기 등은 지자체 승인 관련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추후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시행변경인가, 구조재심의(파일기초에서 지내력기초로 변경 등) 등을 거쳐 설계내용 등 변경 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설계 변경시 사전에 계약자의 동의를 득하며, 아파트 및 부대시설, 각종 시설물 등의 미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li> <li>•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ul>
	주변 현황/ 단지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경수 수종 및 규격, 식재의 위치 / 휴게시설물(파고라, 벤치류), 놀이 및 운동시설물 / 수공간 및 정원의 형태와 위치 / 포장 선형 및 패턴 등은 인허가 과정 및 실시설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하부세대 지붕 상부는 공용공간으로 특정세대에서 점용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li> <li>•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 조망 침해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등, 야간 조명,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과 인접세대 소음, 빛공해, 사생활권 침해 등</li> <li>- 단지 배치 상 지하주차장 램프 / 기계실 / 전기실 / 발전기실 / 제연휀룸 /우수조 / 쓰레기 집하시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의 탈취기, 송풍기, 실외기 등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냄새, 진동,수증기, 매연 발생 등의 환경권 침해 등</li> <li>- 주변 건축물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옹벽·석축, 단지 내 휴게공간·필로티·어린이놀이터·드라이에어리어(D/A)·채광창(Top Light), 자전거보관소,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소음 발생 등 환경권 침해 등</li> <li>- 단지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소음 발생, 일조·조망·사생활권 및 환경권 침해 등</li> <li>• 각종 광고 및 홍보물(건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주변에 있는 시설(철도, 도로, 공원, 완충녹지, 학교, 공공청사, 보행로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 시설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계획레벨(도로, 완충녹지, 학교, 공원 등)에 따라 실 시공시 단지레벨 및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시공범위 외 기반시설의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li> <li>•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배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없는 사항임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li> <li>•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물 및 파고라 등의 크기, 형태는 추후 실시설계 진행에 따라 변형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의 마감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사업부지 외 옹벽(사직고등학교 기존옹벽 등)은 별도의 추가마감 공사가 없으며, 현상태 유지된다.</li> <li>• 본 단지의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르며, 해당 주택개발지역은 사직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에서 결정하는사항으로,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에 따라 분양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입주전에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교육청 및 동래교육지원청)</li> <li>•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li> <li>• 각 동의 코어에 설치되는 EV는 비상용 EV만 반영되어 있으며, 별도의 피난용EV는 설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세대 코어의 EV는 1대, 3세대 코어의 EV는 2대)</li> <li>•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램프, 계단, 옹벽, 조경석쌓기, 자연사면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용자로 하여금 프라이버시,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아파트주동/공동/공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 외부장식물에 의한 조망 및 일조 침해, 빛반사로 인한 빛공해</li> <li>- 지하주차장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제연휀룸/우수조/송풍기, 실외기 등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및 돌출물/시설물(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태양집광판, 피뢰침 등) 등으로 인한 일조, 빛공해, 조망간섭 등의 환경권 침해</li> <li>- E/V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발생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li> <li>- 109동 옥상에는 옥상수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인접한 세대의 소음, 진동 발생 등의 환경권 침해</li> </ul> </li> <li>• 단지 내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li> <li>• 일부동 하부에 필로티가 설치될 계획(일부 또는 전체)이며, 하부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동 또는 세대는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에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 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는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국기봉은 세대별로 설치되지 않으며 각 동별 입구에 공동 국기봉이 설치됩니다.</li> <li>• 주동 필로티 및 외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 등 세부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li> <li>• 단지 커뮤니티(휘트니스, 독서실 등) 설계 및 제공되는 시설류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였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li> </ul>

- 103동 최상층에는 공용시설인 특화 커뮤니티시설(스카이크뮤니티)이 설치되며,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모형 및 각종 이미지(조감도 등)에 표현된 마감재의 규격 및 색상, 높이 등은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103동 이외의 입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103동 세대들 저층세대 및 최상층 하부세대는 프라이버시 및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다.
- 본 단지의 커뮤니티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게스트하우스 등과 인접한 일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확보에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 커튼월록에 접한면에 창호가 있는 세대의 경우 마감으로 인해 외부 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의 창호는 동등이상의 성능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 종류, 형식, 분할면수 및 규격, 난간유무, 로이유리 면수, 디자인,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다.
- 저층부 세대의 경우 석재 마감으로 인해 외부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공동주택 주차장 영역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과 구분하여 계획되어 있으나, 차량 출입구는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사용합니다. 또한, 실시공 시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영역은 위치가 변동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별도의 출입 통제시스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차량출입구 통행 개선을 위하여 차단기가 추가설치, 삭제, 위치이동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도로폭 확대 및 보행로폭 축소될 수 있다.
- 공동주택 주차장은 각 동별 주차공간의 분포 및 위치에 따라 이용 시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연결 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도별로 상이합니다. 또한, 경차, 장애 인전용, 확장형주차, 여성전용, 일반 주차대수 등의 분포는 일부 동에 편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배치 및 사용 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 바랍니다.
- 옥탑, 옥상 및 지하주차장 바닥에 무근콘크리트 및 신축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미시공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백업재 및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일부 아파트 지붕 및 지상 일부구간에 경관조명, 공청TV안테나,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상세계획(설치면적,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시 연돌효과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용부 창호의 실시 위치, 개소,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준공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차함/전기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트렌치 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에폭시코팅 및 주차라인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트렌치커버는 측면만 시공)
- 엘리베이터홀, 부대시설의 경량천장틀 시공부위에 천장틀의 처짐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 되지 않을 경우 마이너찬널 보강은 제외합니다.
- 엘리베이터에 설비가 추가되는 경우, 승강로의 골조높이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의 엘리베이터 홀은 직접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 인지하고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홀, 지하층 통행로 등 공용부의 벽체타일 및 세대 아트월은 에폭시 떠붙임 공법으로 시공시 4~5지점(600\*600기준) 지지로 시공됩니다.
- 무늬코트 도장 마감인 경우, 상도코팅은 현장여건에 따라 무광으로 시공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유효높이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지하 1층 - 주차장 차로 높이 2.3m(주차공간 2.1m 이상)
  - 지하 2층 - 주차장 차로 높이 2.3m(주차공간 2.1m 이상)
  - 지하 3층 - 주차장 차로 높이 2.7m(주차공간 2.1m 이상) - 출입구 높이 2.7m
- EPS, TPS, AD/PD, PIT, ST, AV 등의 내부벽체(ALC(경량콘크리트블록), 조적벽체, 콘크리트벽체)는 초벌미장 시공을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체 미장은 E/V 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합니다.
- 시멘트 몰탈 마무리두께는 10mm 내외로 합니다.
- 창호는 공사여건에 따라 ±50mm범위 내에서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환기 및 냉난방설비(장비, 덕트 등)는 공용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창의 개폐여부 및 방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최상층 및 지하주차장, 지상 일부구간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높이가 60m 초과시에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5분의4가 되는 지점에 돌침형피리침이 설치되어 건물외벽(특정세대 발코니앞) 미관에 영향이 있을

	<p>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엘리베이터와 인접된 세대에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li> <li>•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li> <li>• 옥외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CCTV와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li> <li>•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및 제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진동,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건물의 발전기실에는 비상발전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점검 등으로 인한 기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li> <li>•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li> <li>•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 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계장치 설치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상층: 102동, 104동, 106동, 108동</li> <li>- 지하2층: PIT(102동, 104동, 109동)</li> </ul> </li> <li>2. 옥외 안테나 설치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상층: 102동, 104동, 106동, 108동</li> </ul> </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 법적 의무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은 법적개소 이상 계획 하였으며, 추후 설치위치 및 개소수는 법적개소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각 동별 이용 가능한 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충전위치 외측면 벽체는 창호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102동과 103동 저층세대에 인접하여 지하에 실내 골프연습장 설치되며, 이로 인해 소음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101~110동별 단위세대(1~5호)의 배치가 상이 하므로 계약시 반드시 동호수 배치도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li> <li>• 공용부 등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된다.</li> <li>• 근린생활시설용의 덕트,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무인택배함의 설치 유무,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동 세대별 접근 거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의 옥상 상부에는 태양광 패널이 다수 계획되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등) 수량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 됩니다. 시야 간섭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소음, 냄새, 그늘음,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 및 빛 반사로 인한 빛 공해등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 위치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탑 구조물 및 장식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건식공법(모듈러, PC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한전패드 위치 등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 일부 주동 공용부 구조체의 구조 성능향상을 위해 공용홀 외측으로 바닥슬라브가 연장되어 있고, 이 부분은 도장으로 마감됩니다. 주동 공용홀창호를 통해 외측으로 연장된 바닥 슬라브로 접근이 불가하며, 슬라브의 규격 및 색상, 접근가능여부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동 지하층 공용홀에는 단차가 형성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하 공용홀 레이아웃 및 동선이 변경될 수 있다.</li> <li>• 녹색건축인증, 장수명주택인증 등의 각종 인증, 평가는 추후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항목별 점수 및 총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단위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세대가 일부 존재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li> <li>•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배관이 천정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li> </ul>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 일부세대는 품질관리 등을 위한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샘플하우스 사용 이후 원상복구를 하고 계약자에게 인도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 및 개소가 결정됩니다.
- 목창호 도어에는 손끼임 방지 장치가 제공됨. 안전을 고려한 설계이므로 설치 위치 및 작동 방식을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기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현관 중문(유상옵션 품목)에는 모헤어 또는 가스켓이 설치되며, 틈새를 통한 누기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철제방화문(현관 등)은 방화성능을 고려하여 본 공사시 하부씰, 상하좌우 프레임 형상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시 타일, 세라믹타일, 엔지니어드 스톤 및 천연가공석(거실 벽, 주방 벽/상판,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유상옵션 미선택 시 냉장고장 및 김치냉장고 크기 사전 확인 후 가지고 계신 가전기기 사이즈가 못 들어갈수 있으니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공사시 각종 가구류의 사양(개폐방식 및 손잡이디테일, 휠라 사이즈 및 위치,열림 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불박이장, 안방불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거울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천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배선기구,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타일(옵션포함)의 패턴은 제품 특성상 무늬가 연속적이지 않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공사시 세라믹타일(유상옵션)은 본공사시 운반 및 품질확보를 위해 분절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 분절되어 시공될수 있으니 계약 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라믹타일 옵션선택 시 거실 아트월, 주방상판, 주방벽체 등에 적용 시 자재특성에 따라 본공사 시 패턴 불일치, 분절라인 조정 등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국산원목마루 유상옵션 선택 시 원목마루 특성상 이색 및 패턴상이, 웅이 등이 발생되오니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공사시 욕실 수입타일(유상옵션)바닥재는 타일 길이, 폭 등 벽타일과 메지불일치 및 메지두께가 두꺼울수 있으니 계약 전 인지하시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현관중문 유상옵션 선택 시 현관중문 슬라이딩 도어와 만나는 벽체, 천장, 가구 등에 따라 본공사 시 사이즈 및 디테일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유상옵션 품목인 슬라이딩도어와 가구 및 벽체와의 간격은 서로 상이할수 있으며, 슬라이딩 도어는 실내창호로써 기밀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침실2, 3 슬라이딩도어 및 양면형불박이장 유상옵션(옵션가능 해당타입 限)선택 시 가구설치로 침실사이즈가 줄어들고 벽체대신 가구설치로 인하여 벽체대비 기밀성부족으로 소음발생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라믹타일 옵션선택 시 거실 아트월, 주방상판, 주방벽체 등에 적용시 자재특성에 따라 본공사시 패턴 불일치, 분절라인 조정 등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자재(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코너선반 등), 욕실 헨 등의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 욕실 천정 내부, 다용도실, 실외기실 벽체 및 주방가구 옆면, 뒷면 등에 PD 내부를 점검하기 위한 내시경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점검구 마감을 위한 덮개가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2(보조주방)에서 세탁기 상부에 건조기를 적재 설치할 경우 창호개폐 또는 선반수납, 보일러의 유지관리 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 면적이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대칭형으로 계획되어 침실, 거실, 주방 등의 향, 조망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계약전 해당세대의 향, 조망 등을 확인 후 계약 하여야 합

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공간특화 미선택시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하는 냉장고 크기에 따라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건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단자함, 세대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 기타 마감이 건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등기구 보강은 "원형 매입등  $\phi 800$ , 사각 매입등  $800*800$ " 규격 이상에만 해당됩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싱크장 하부, 펜트리, 가구 내부에는 온수분배기 및 배관/배선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가구 및 마감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 공간이 일부 제한됩니다.
- 세면대 하부장(유상옵션) 사용 시 물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면대 사용 후 가구 등 마감재에 묻어있는 물 닦기 등 입주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 세면대 가구(유상옵션) 내부에는 각종 시설물(배관, 밸브, 점검구, 배수로 등) 설치로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가구, 가전, 평면선택 등)은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천장형 에어컨은 유상옵션 품목으로 미선택 시 전 평형에 냉매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 기준 1개소, 안방 벽걸이형 기준 1개소)가 제공되며, 천장형 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은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 설계가 적용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축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및 사용자의 생활 환경이나 습관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 등 창호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본 공사시 마감재 설치 등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커튼박스 크기는 설비 배관상의 이유로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흡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자의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시 코킹 시공 부위 및 색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TV가 설치될 경우,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스마트 주방거치대 후면 높이에 설치 및 후면에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 주방TV가 설치될 경우, 주방 가구 유상옵션에 따라 설치되는 가구장 매립 조명과 간섭될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설치형태가 변경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조명스위치(전자식 스위치)와 온도조절기는 각 제조사별로 색상이 다를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 유/무 및 사용성 개선에 따라 온도조절기 및 조명 스위치는 통합형 또는 분리형으로 적용 될 수 있으며 건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다.
- 주방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콘센트 및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가스배관, 가구장, 약세서리 등 평형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이 건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으며 평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주방 타일면에 노출되어 설치 될 경우,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li> <li>• 세대 내 마감상황(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과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시 제품개발에 따라 배선기구 및 전자식SW 기능이나 디자인, 색상, 설치 위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내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장소별 색온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카투홈 서비스는 현대/기아차 19년 이후 생산 모델 중 카투홈 기능이 있는 차량으로 해당차량의 커넥티드서비스(블루링크, UVO, 제네시스)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서비스는 제조사의 운영 및 요금정책에 따라 기능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i> <li>• 세대별 세대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li> <li>• 견본주택 각 타입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펜던트는 전시용으로 실 시공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홈네트워크 설비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유지 등에 따라 미 입주시에도 일부 전기사용량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세대분전반 차단시 홈네트워크설비, 방범 및 경보 알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li> <li>• 주방 내부에 가스배관 및 가스차단기(가스 쿡탑 사용 限),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가구의 깊이가 줄어들 수 있으며,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가스 쿡탑 사용 시, 주방 상부장 위쪽으로 가스 배관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사용상의 문제가 없는 한 하자 사항이 아님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li> <li>• 주방 상부장 하부의 간접조명은 가스배관, 가스차단기, 자동식 소화기 제어기 설치 등으로 분절, 축소 될 수 있습니다.</li> <li>• 아일랜드 식탁의 상부에 인덕션 및 독립형 후드가 설치되는 유상옵션을 선택 한 세대의 경우 가스 쿡탑 사용이 제한됩니다. 추후 가스 쿡탑 이용 시, 가구 수정공사가 필요하며 이는 입주자 분임을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li> <li>• 실외기가 침실 또는 거실에 면한 발코니에 설치되어 실외기 가동시 소음이나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li> <li>•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보일러가 제공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조명특화 옵션 선택 시 거실 우물천장 리니어 조명 및 우물천장 간접등은 천장 길이에 따라, 조명이 분절 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 조명특화 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펜던트형 블루투스 스피커 조명은 평형별로 위치, 개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이 탑재된 등 기구는 세대 당 1개만 제공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 유상옵션 품목인 H Bell은 거실에 1개소만 설치됩니다.</li> <li>• 59C 타입(미건립) 세대는 평면 특성으로 인하여 주방 관련 특화 옵션 시에도 우물천장 간접조명이 제공되지 않습니다.</li> <li>• 59C 타입(미건립) 세대는 주방 관련 옵션 선택 시, 거실 우물천장이 주방으로 확장되어 주방 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특화 옵션 금액이 상이함을 확인 바랍니다.</li> <li>• 본 공사시 제품개발에 따라 배선기구 및 전자식SW 기능이나 디자인, 색상, 설치 위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다.</li> <li>• 마이 힐스(my Hills)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 마이 힐스(my Hills)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마이 힐스(my Hills) 연동된 IoT가전기기(삼성, LG) 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실외기실 수동 루버 수동개폐용 손잡이는, 제품의 특성상 그릴 오른쪽에 위치하여 사용상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에어컨은 실외기실 루버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정상 작동함으로 기기 사용시 실외기 열림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12      기타사항**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스카이라운지,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경로당, 독서실, 스터디룸, 스크린야구, H위드팩, 세탁실, 음악연주실, 프라이빗영화관, H아이숲, 힐스라운지, 스크린골프, 골프연습장, GX룸, 피트니스, 사우나, 탁구장 등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주택법」제48조의2 제1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 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 : 29년 02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9의2)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1층	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3m
지하2층	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3m
지하3층	2.7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7m

■ 내진 성능 및 능력

최대지반가속도	내진능력(MINI등급)
0.207g	VII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외기에간접면하는부위의단열재설치는비난방공간과면하는난방공간의외벽을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인증받은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0.7kw 이하전동기, 소방 및 재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급탕 및 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부산 사직 1-6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인증번호	제2020-2983호
건축주	사직 1-6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준공(예정)일	2024년 08월	유효기간	2020.11.3. ~ 사후유연성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2동 630 일원		
층 수	지하 3층, 지상 35층 / 1090세대	인증등급	일반등급(중등준비)
면적	178,698.8621㎡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건축물의 추진 형태	공동주택	공도고용부서	제2016-341호
설계자	하나유동인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제2016-110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평가]

중합등급 ☆☆☆☆

2020년 11월 3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NI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7.>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부산 사직 1-6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신 청 자: 사직1-6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 대 지 위 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2동 630 일원  
4. 성 능 등 급

가. 소용 관련 등급		다. 환경 관련 등급	
1. 강유력층을 차단하는 성능등급	☆☆☆☆	1. 내구성	☆☆
2. 중합층격을 차단하는 성능등급	☆☆	2. 기밀성	☆☆☆☆
3. 세대 간 갈레리의 사용성	☆☆	3. 추위방지 성능등급	☆☆
4. 고품수질(도유, 횡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4. 수리용이성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5. 내열성	☆☆

나. 구조 관련 등급

1. 내구성	☆☆
2. 기밀성	☆☆☆☆
3. 추위방지 성능등급	☆☆
4. 수리용이성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1. 단차니·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인접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주차기 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관리시설의 접근성	☆☆☆☆
5. 견정화장의 화장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메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담배연기의 저감화 계획	☆☆
10. 공동주택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후너브릭의 총합치수율	☆☆
14. 발발양전 콘서트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1. 화재 위험도	☆☆
2. 차단성	☆☆
3. 내화성	☆☆
4. 수질비대기	☆☆
5. 복도 및 계단 유호너비	☆☆
6. 피난성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11월 03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 <개정 2017.1.20.>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사직 1-6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인증번호	20-주-대-11-0136
준공연도	20220901	평가자	조영주
주소	부산 동래구 사직동 630	인증기관	한국건설에너지기술원
층 수	지하3층 / 지상35층	인증기준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178429.0346(㎡)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감시 종료일
건축물의 추진 형태	공동주택		
설계자	대니.대안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22.1	46.5	37.1	9.8
급탕	30.7	35.6	29.5	7.3
조명	13.9	13.9	38.3	6.5
기계		4.0	11.0	1.9
합계	66.7	100.0	112.9	25.5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개질,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된 단위면적당 이상화장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 ) 설치로 [ V ] 설치되지 않음(건축물별)  
 \* 에너지효율 등급은 건축물 인증 후에 부여되며, 실제에너지 소비량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온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08월 06일

한국건설에너지기술원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은 본 인증서(준공 시) 1+등급으로 신청될 예정 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12025-101-0003900호	₩ 146,520,4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자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입니다.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담보 책임 및 하자보수책임은 하자보증 기간 내에서 보수의 책임을 지며, 아파트 하자판정 및 보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VAT별도)

구분	건축	전기	통신·소방
회사명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세종씨엠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3,506,828,000	695,551,818	870,0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회사명	사직 1-6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대건설 (주)	지우알앤씨 (주)
법인등록번호	180171-0011900	110111-0007909	180111-0652867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52, 4층(사직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4404호 (우동, 센텀리더스마크)

■ 현장 및 견본주택 위치 안내

 <p>모델하우스 위치도</p> <p>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640-14</p>	 <p>현장 위치도</p>	견본주택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11					
		현장 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2동 630번지					
		운영 시간	10:00 ~ 18:00					
		분양 문의	1551-8235					
		주요 일정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기간	계약기간
			2025.09.29.(월)	2025.09.30.(화)	2025.10.01.(수)	2025.10.16.(목)	2025.10.17.(금) ~2025.10.21.(화)	2025.10.27.(월) ~2025.10.29.(수)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s://hillstate.co.kr/s/sajik">https://hillstate.co.kr/s/sajik</a> )					

※ 본 모집공고는 공급(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청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급(분양)계약서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시 됨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 및 공급(분양)계약서 상의 기재사항 오류 및 미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 견본주택 내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만차 시 주차가 불가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에 의거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평면도 및 시방서는 견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